

---

#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 자율 2차 모집

---

2024년 2월

제주한라대학교

## 대학소개

### 1. 건학이념

- 훈회보국(訓誨報國) :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 인술광시(仁術廣施) :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

### 2. 대학의 사명

제주한라대학교는 창조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류 문명의 창달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3. 교육목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우리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수준 높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연구·봉사하며, 지역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창조적 지식 전문직업인 육성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 4. 교육목표

제주한라대학교는 본 대학교의 발전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특성화 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전문 직업교육을 수행하며, 둘째, 대학교의 발전이념과 연계하여 시대성과 상황성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설정하며,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셋째,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전문 직업인을 양성하여 최상의 교육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원서 접수	인터넷접수	2024. 2. 14.(수) 09시부터 매일 17시까지 (마감 : 2024. 2. 29.(목) 17시)	진학어플라이 ( <a href="http://www.jinhakapply.com">http://www.jinhakapply.com</a> )	진학어플라이에서 원서접수
	방문접수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	09시부터 17시까지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하지 않음)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수시발표)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합격자 문의 전화번호 참조 (학과장, 학과사무실)
합격자 등록		개별통보(수시등록)	농협 및 제주은행 전 지점 우리대학교 교내 농협지점	지정 은행 영업시간 내 (등록금 납부)

- ※ 매일 17시 마감하고 당일 합격처리 하며,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연락 통보함  
(미달된 인원은 익일 다시 모집함)
- ※ 추가서류는 원서 접수와 동시에 제출해야 함
- ※ 모든 학과(전형)의 전형료가 면제되고,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단, 인터넷 접수 대행업체 접수수수료는 납부하여야 함)
- ※ 타 대학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도 지원할 수 있음
- ※ 원서 접수는 대학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진학어플라이) 가능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등록 및 환불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입학홍보처 064-741-6551~4)

## 모집 학과 및 전형

### (1) 학사 과정(4년제)

학부	모집학과	수업 연한	정원내	정원외								합계	
			일반 전형	농어촌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특성화고 졸재직자	전문대 /대졸자	만학도/성 인재직자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북이탈		
간호	간호학과	4년		11	5			6	2			1	25
생명자원	마산업자원학과	4년	1				5		1		2	1	10
	마사학과	4년	3				5	2			2	1	13
국제관광호텔	호텔경영학과	4년	26					5	1	1	5	1	39
	호텔외식경영학과	4년	14					5	1	1	4	1	26
	국제경영학과	4년	21					4	1	1	4	1	32
정보기술/건축	방송영상학과	4년	6					4	1		2	1	14
	인공지능공학과	4년	21					3	1		3	1	29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과	4년	3		3			4	1	5	2	1	19
예술	산업디자인학과	4년	1					3			1	1	6
합계			96	11	8	10	36	9	8	25	10	213	

※간호학과는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교육인증을 받은 학과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 (2) 전문학사 과정(2·3년제)

학부	모집학과	수업 연한	정원내	정원외								합계	
			일반 전형	농어촌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특성화고 졸재직자	전문대 /대졸자	만학도/성 인재직자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북이탈		
보건	임상병리과	3년	7					2				1	10
	방사선과	3년	33					8	3			1	45
	물리치료과	3년		3				1				1	5
	작업치료과	3년	16					4	2			1	23
	응급구조과	3년	3	1	5			2	3			1	15
	보건행정과	3년	13					3	1		2	1	20
국제관광호텔	관광경영과	2년	15					4	4	1	4	1	29
	관광영어과	2년	4					2	1	1	2	1	11
	관광일본어과	2년	9					2	1	1	2	1	16
	관광중국어과	2년	14					2	2	1	2	1	22
	호텔조리과	2년	73					13	5		14	1	106
	레저스포츠과	2년	5		2			4	3		3	1	18
사회복지	사회복지과	2년	21					5	14	4	5	1	50
	복지행정과	2년	6					2	1	7	2	1	19
	유아교육과	3년	14		5								19
정보기술/건축	컴퓨터정보과	2년						2	1		1	1	5
	컴퓨터멀티미디어과	2년	5					2	1		2	1	11
	건축디자인과	3년	3					1			1	1	6
예술	음악과	2년	12					3	2		3	1	21
	뷰티아트과	2년	17					5	1		5	1	29
생명자원	환경원예과	2년	8					2	1		1	1	13
합계			278	4	12		69	46	15	49	20	493	

- 전 학과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하며, 신체적/이념적/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 없이 지원이 가능함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등록 및 환불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문의 : 입학홍보처 064-741-6551~4)

## 전형구분별 지원자격

###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농어촌학생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 ①~②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유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계속 이수한 자로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출신인 경우 해당지역) 지역에 거주한 자
  - ② 유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본인만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함)
- 중·고교 6년간 교육과정 농어촌지역 이수자(본인, 부모 거주자) 중 부모가 사망, 이혼 또는 실종한 경우
    -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 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자와 읍·면(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출신인 경우 해당지역) 지역에 거주해야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률상의 입양일 이후부터는 동거하는 양부모 또는 친부모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함
  - 초·중·고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초·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 여부 확인)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 1차 산업종사자인 농·어업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함

### ○ 재직기간 산정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 영세 개인 사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반영함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

전형 특징 및 요건	지원자격
전문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중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포함)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전형 특징 및 요건	지원자격
만학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자(1999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성인재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 재직(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지원일 기준)

##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보건복지부)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등록(국가보훈처)을 필한 자

##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구성원(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 지원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부, 모, 본인 모두)

## 북한이탈주민 전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통일부장관(이관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제출서류

## 1.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고교 졸업(예정)자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인터넷 접수자는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교장 직인 날인
	<b>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대상자</b> - 2016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 출신 지원자 - 2015년도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교육감 직인 날인
	<b>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대상자</b> - 2015년도 이후 합격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 2014년도 이전 합격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의 대입전형자료 확인 및 신청에서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생성하여 입학지원서에 기입하여야 함	
외국고 출신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공증 번역하여 제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및 우리대학 입학홍보처로 문의)	

## 2. 추가 제출서류(지원자격 확인서류)

※ 위 공통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의 전형 특징 및 요건에 해당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함  
(일반전형 지원자는 추가 제출서류가 없음)

전형 특징 및 요건		제출서류
정원의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①유형 - 농어촌학생 전형 추천서(학교장) 1부(본 대학 소정양식)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고등학교 학생부 온라인 제공자는 중학교 학생부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 명의로 발급) 1부, 부/모/학생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학생의 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
		②유형 - 농어촌학생 전형 추천서(학교장) 1부(본 대학 소정양식) -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고등학교 학생부 온라인 제공자는 초·중학교 학생부만 제출) -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의 초·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 족 지원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등(구체적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 참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산업체 재직기간 확인서 1부, 산업체 재직증명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 직장 4대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입확인서 중 택 1부 - 병적증명서 1부(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실점 평균 기재) 1부
	대학 졸업(예정)자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실점 평균 기재) 1부
	만학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성인재직자	- 재직(경력)증명서 1부 - 직장 4대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입확인서 중 택 1부
	장애인 등 대상자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등)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부모 명의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보호담당관 발급) - 학력증명서 1부(교육감이 학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 지원자의 경우 확인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필히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발급자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시·군·구청장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가능)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시·군·구청장 ◦ 읍·면·동 주민센터장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일 세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유의사항)

- ①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②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하지 않아 지원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전환되며,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방법

### • 대입지원 위반 안내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자율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1. 복수지원이 불가하며, 1개학과 1개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2. 타 대학 정시모집 및 자율(추가)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입학지원서 접수

### 1. 입학지원서 교부

우리대학교 본관(금호관) 1층 입학홍보처에서 교부[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u.ac.kr>)의 “입학안내” → “입시자료실”의 입학지원서 양식을 파일(한글 또는 PDF)로 다운로드 받아 A4용지에 출력 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반드시 확대 또는 축소 없이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

### 2. 입학지원서 접수

※ 지원자는 접수방법(인터넷, 방문)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함

#### 가. 인터넷 접수

##### ■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① 인터넷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 진학사(<http://www.jinhakapply.com>)
- ② 인터넷 원서 접수 절차 : 대행사 홈페이지의 원서접수 방법(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참고
- ③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반드시 원서접수 비용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함
  - 결제 이전에는 원서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결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할 것
  - 접수사이트의 회원가입에 따른 약관과 원서접수 시 나타나는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입력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일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는 통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하면 편리함
  - 인터넷 접수 후 특별전형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나. 방문접수

우리대학교 구내 접수처(금호관 1층 입학홍보처)

※ 원서접수는 09시부터 17시까지 하며, 접수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비용

- 원서접수 비용 : 면제 (단,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수수료 5,000원은 자부담)

## 지원자 유의사항

1. 접수된 입학원서는 학과의 변경, 전형구분의 변경, 접수의 취소를 할 수 없음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험생의 전형 성적 및 전형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3. 특별전형 지원자가 특별전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분류하여 사정하며,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류 미제출자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함
4. 지원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지 말고 새로운 지원서로 작성하기 바라며, 부득이 기재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 후 날인하여야 함
5.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 입학 취소

1. 지원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지원 자격 미달자에 대하여는 입학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합격 후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상에 위조,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법한 행위로 합격한 자는 입학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 입학사정에 사용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발표방법 : 개별통보(수시발표)

### ※ 유의사항

- 합격자가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기간 내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등록금 납부

합격한 자는 반드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합격자 조회 후 합격통지서와 등록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지정은행에 등록(납입금 납부)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 안에 지방보훈(지)청에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대학 입학홍보처(금호관 1층)로 제출하여야 함
-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대학 입학홍보처(금호관 1층)로 제출하여야 함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 전액을 선감면 처리하여 드리며, 우리대학교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함)

##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

-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등록포기서(소정양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뒤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로 신청함
  - 등록금 반환신청 서류
    - 입학등록포기 및 등록금반환신청서 1부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에 양식 비치)
  - 등록금 반환신청 첨부서류
    - 수험생 본인의 신분증, 도장 및 예금통장
    - 부모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 반환 등록금은 입학등록포기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뒤 1일 이후에 지원자(또는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됨
- 등록금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함

## 학과별 입학 관련 문의 전화번호 안내 (학과장 · 학과사무실)

학 과 명	학과장	학과사무실	학 과 명	학과장	학과사무실
간호학과	741-6563	741-7610	관광경영과	741-6786	741-7644
마산업자원학과	741-6572	741-7533	관광영어과	741-7618	741-7641
마사학과	741-7672	741-7533	관광일본어과	741-7541	741-7675
호텔경영학과	741-6757	741-6535	관광중국어과	741-7402	741-7462
호텔외식경영학과	741-7654	741-6765	호텔조리과	741-1608	741-7548
국제경영학과	741-6523	741-6537	레저스포츠과	741-6707	741-7540
방송영상학과	741-7466	741-7465	사회복지과	741-7605	741-7692
인공지능공학과	741-1617	741-7589	복지행정과	741-7447	741-7674
사회복지학과	741-6528	741-6536	유아교육과	741-7425	741-7480
산업디자인학과	741-7693	741-6701, 7482	컴퓨터정보과	741-7404	741-7564
임상병리과	741-7625	741-1691~6	컴퓨터멀티미디어과	741-7669	741-7565
방사선과	741-7442	741-1691~6	건축디자인과	741-7681	741-7483
물리치료과	741-1646	741-1691~6	음악과	741-7660	741-6701, 7482
작업치료과	741-7407	741-1691~6	뷰티아트과	741-7678	741-6701, 7482
응급구조과	741-7623	741-1691~6	환경원예과	741-7432	741-7533
보건행정과	741-7665	741-1691~6	입학홍보처	741-6552~4	

※ 학부별 통합 사무실 운영으로 인해 학과 전화번호가 중복 될 수 있습니다.